

『 관리비 자동이체 약관』 개정대비표

개 정 전	개 정 후	비 고
<p>제 4 조 출금기준 및 우선순위</p> <p>① 관리비 자동납부 금액은 해당 납부마감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.</p> <p>② 관리비 납부마감일에 수종의 자동이체를 하여야 하는 경우의 자동이체를 위한 출금 우선 순위는&lt;별표&gt;의 순서에 따릅니다.</p> <p>③ &lt;신 설&gt;</p>	<p>제 4 조 출금기준 및 우선순위</p> <p>① &lt; 좌 등&gt;</p> <p>② 관리비 납부마감일에 수종의 자동이체를 하여야 하는 경우의 자동이체를 위한 출금 우선 순위는 &lt;별첨&gt;의 순서에 따릅니다.</p> <p>③ <u>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자동이체 입금계좌가 타행계좌인 경우에는 관리비 이체 정산을 위하여 &lt;별첨&gt;의 출금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7 시 이후 개별 출금됩니다.</u></p>	<p>- 관리비자동이체 입금 계좌가 타행인 경우 출금 우선 순위 제외</p>
<p>제 5 조 신청내용의 변경 및 해지신고</p> <p>① 고객이 신청내용을 변경 및 해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납부마감일 전 영업일까지 은행창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.</p> <p>② <u>고객이 이용기관을 통한 해지 신청시에도 은행은 이를 고객의 의사로 간주하여 자동납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③ &lt;신 설&gt;</p>	<p>제 5 조 신청내용의 변경 및 해지신고</p> <p>① &lt; 좌 등&gt;</p> <p>② <u>고객은 이용기관을 통해 해지 및 이체 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동 내용을 통지 받은 경우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합니다.</u></p> <p>③ <u>관리비자동이체 등록 후 6개월 연속 관리비 자동납부 이체실적이 없는 경우, 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통지 후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- 이용기관을 통한 변경고객 기존 자동이체 미해지에 따른 이중 출금방지</p> <p>- 이체방식 및 변경고객의 미해지에 따른 이중 출금방지</p>

\*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